

직원교육 일지

담당	센터장

구 분	2026년 09월 직원 교육
일 시	2026년 09월 28일(월) ~ 30일(수)
시 간	1부 : 13:30 ~ 14:00 / 2부 : 17:30 ~ 18:00
장 소	로댐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교육명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교육내용	※ 진행자 : 김영중 센터장, 김현숙 실장 (1부와 2부 교육 내용 동일함) ▣ 노인권리 보호 (교육 자료 참조)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유형 (교육 자료 참조)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자기 방임) 6. 유기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참조)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상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교육 자료 참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577-1389)

	1.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특이사항 & 비고	
첨부	1. 직원교육 참석자 명단 2. 교육 자료